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85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문금주 · 손명수 · 전진숙
김문수 · 김원이 · 이정문
송옥주 · 서삼석 · 이개호
어기구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하도록 하면서도 적정한 식량 공급을 위한 핵심자원인 농지에 대한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또한 농지의 적극적 활용이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농지의 유연한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곡물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과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연한 농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촌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제3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본방침에 따른 곡물자급률의 예측

제48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 따른 곡물생산량의 예측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농촌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 ----- ----- ----- ----- ----- ----- ----- -----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③ ~ ⑤ (생략)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

-----.

-----.

1. ~ 5. (현행과 같음)

6.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기본방침에 따른 곡물자급률의 예측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u> (생 략) ④ ~ ⑧ (생 략)	<u>7.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 따</u> <u>른 곡물생산량의 예측</u>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